

1. 개정이유

차량에 사용되는 촉매제(요소수)의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방지 및 시장 상황의 면밀한 파악을 위해 촉매제 제조·판매자의 거래내용 등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가 필요하나, 이와 관련한 법률 근거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개정(2008.12.31. 개정, 2009.7.1. 시행)에 따라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, 이와 관련된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에는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(출입·검사 등)에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에 ”촉매제“를 추가하고자 함(제131조제1항제10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1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1조제1항제10호 중 “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”를 “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1조(출입 · 검사 등) ① 법 제 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제131조(출입 · 검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삭 제	
10. 법 제74조에 따른 <u>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</u> 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기준 준수여부, 유류관리 현황, 거래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	10. ----- <u>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</u> ----- ----- ----- -----
11. (생 략)	11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